붙임 1 이전기술개발사업 개요

□ 추진목적

○ 중소기업이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의 **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**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자금을 지원

- 우수기술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 활성화, 기술개발 위험요소 최소화와 기간 단축, 개발비 절감 등을 도모

* 지원근거 :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4조

□ 사업내용

① 선도과제(지정공모) : 대학 및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선도과제로 제안한 RFP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개발시 자금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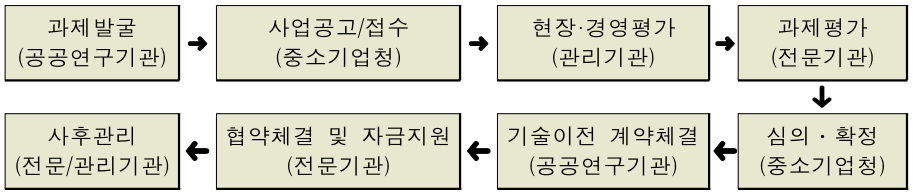
* 소요비용의 70%까지 과제당 5억원/2년 한도 지원

② 실용과제(자유응모) :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기술이전 계약체결(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)후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개발 자금 지원

* 소요비용의 75%까지 과제당 2.5억원/1년 한도 지원

□ '09년 지원규모 : 200억원(신규과제 73개, 계속과제 36개)

□ 추진절차



* 선도과제 기준, 실용과제는 과제발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절차가 없음
* 전문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관리기관 : 지방중소기업청